

1. 개정이유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 구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구분 주체 변경(안 제2조)

- 1) AI·빅데이터·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시부터 향후 사업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사업관리 가능성, 중복투자 방지 필요성, 예산규모, 정책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필요성이 증대됨.
- 2) 현재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합참이 작전개념을 주로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소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종합적 조정·통제 권한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유연화하기 위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주체를 국방부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을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합동참모의장”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같은 항 중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을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구분·결정하는 기준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u> (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u>합동참모의장</u> 이 이를 구분·결정한다.	제2조(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①----- ----- ----- ----- ----- <u>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u> ---- ----- ----- <u>국</u> <u>방부장관</u> ----- ----.
② <u>합동참모의장</u> 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u>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u>국방부장관</u> ----- ----- ----- <u>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각군</u> -----.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구분·결정하는 기준 및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방부장관</u> 이 정한다.